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별표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장티푸스
2. 파라티푸스
3. 폐결핵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중 사고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제2항에 따른 검진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.

건강진단 결과서(식품위생 분야 종사자)

접수일		발급번호		
신청인 성명		주민등록번호		
검사항목	검사일자	판정일자	검사결과	유효기간
장티푸스				
파라티푸스				
폐결핵				
비 고(의사소견 등)				
판정자 면허번호		의사	(서명)	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발급일 년 월 일

OO시·군·구 보건소(의료기관명)(기관직인)

유의사항

- 건강진단 결과 모든 검사결과 정상 또는 정상(경계)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하도록 합니다. (예시: 123456-2XXXXXX)

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건강진단 항목 등) ①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<u>별표와 같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건강진단 항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 <u>장티푸스</u></p> <p>2. <u>파라티푸스</u></p> <p>3. <u>폐결핵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중 사고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제2항에 따른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(건강진단 실시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건강진단 실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.</u></p>